

## 禮安鄉約을 통해서 본 退溪의 鄉民自治觀\*\*

黃 丙 坤\*

### • 目 次 •

序 言	II. 禮安鄉約의 특징
I. 朝鮮朝鄉約의 유래와 立約의 始原으로서의 禮安鄉約	III. 禮安鄉約 내용을 통해 본 自治觀

### 序 言

退溪 李滉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주로 그의 철학적인 업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가 평생을 거의 성리학에만 진력하였고, 또 이에 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극히 온당한 경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선조에서의 대부분의 학자가 그러했듯이 이황도 당대의 官人이었고 또한 사람을 이끈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다. 따라서 관인으로서 또한 지성인으로서의 그의 활동 및 의식이 추출, 이해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本稿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퇴계 이황에 대한 학문이나 사상과는 달리 극히 작은 부분으로서의 그의 독창적 향약이 내포하는 鄉民自治觀의 성립 과정과 그것이 조선조 향약에 미친 영향을 더듬어 봄으로서 조상의 빛나는 얼을 재조명해 보려는데 있다.

\* 경희대 중문학과 명예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52호(1986) 게재논문

## I. 朝鮮朝鄉約의 유래와 立約的 始源으로서의 禮安鄉約

조선조향약이 성립된 始原을 말한다면 『立約的 始源』으로서는 이퇴계의 예안향약을 들지 아니할 수 없겠다. 이퇴계는 아시다시피 『조선의 朱子』라고까지 일컫는 이조의 대유학자이다. 그는 연산군 7년(1501년) 11월 25일에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에서 태어나서 선조 3년(1570년) 12월 3일 逝去하였다.

그는 중종 29년(1534년) 3월에 등과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의 벼슬부터 시작하여 선조 2년(1569년) 판중추부사 겸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을 사임하기까지 거의 삼십여년간에 걸쳐 官界를 넘나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무려 15~16차에 걸쳐 공무의 취임이나 사퇴로 京鄉을 왕래하면서 지방의 교화제도에 대한 미진한 점을 통감한 때도 있었으리라는 것이 史家들의 定評이다.

더우기 그가 33세이던 중종 28년(1533년)에 慕齋 金安國을 상면한 적이 있었다. 당시 김안국은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중 『諺解呂氏향약』을 도내에 頒布함으로써 우리 나라 鄉約事行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이퇴계는 만년에 이르러 과거 慕齋선생과 상봉하였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慕齋를 뵈옵고 비로소 正人君子의 言論을 들었다(自言見慕齋, 始聞正人君子之論)].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퇴계의 향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었던 계기가 바로 모재선생과의 상봉에 있었지 않았던가 싶다. 그후 이퇴계는 鄉里인 예안에 退居하여 있으면서 명종 11년(1556년) 12월에 마침내 『예안향약』으로서의 『鄉立約條序 附約條』를 기초하였는데 이 향약은 呂氏鄉約이나 朱子增損呂氏鄉約등 여타 향약과는 판이한 우리 실정에 알맞는 조선조 향약으로 立約되었던 것이다.

이퇴계가 쓴 『鄉約條序』를 근거로하여 예안향약을 기초하게 된 동기

를 더듬어 본다면 이퇴계는 그의 고향 선배의 한사람인 名儒 龔巖 李賢補의 遺志를 받들어 그가 死去한 다음 해인 명종 11년(1556년)에 鄉大夫들의 권고에 따라 이현보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立條하고, 그것을 다시 널리 鄉人들에게 두루 보여 可否를 심의케 한 다음에 비로소 成文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예안향약은 여씨향약 내지는 주자증손여씨향약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도리어 그것은 李太祖가 親製한 鄉憲 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평이다. 이리하여 여기서 비로소 순수한 우리 풍토에 알맞는 이른바 『조선향약』을 성립시켰다는 데서 立約的 始源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 예안향약은 이퇴계의 연보에 따르면 사정에 의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先生草約, 因事不果行)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퇴계의 생존중의 일일 따름이었다. 그의 사후에는 그 학통이나 문벌들이 영남도처에서 융성함에 따라 이 예안향약은 여씨향약 내지 주자증손여씨향약과 더불어 여러 곳에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예컨대, 풍산의 김씨, 하회의 유씨, 상주의 유씨·정씨, 진주의 임씨 등의 문중에서 이 예안향약이 채용되어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시 영조 때에는 李大山(이름은 象靖)과 더불어 퇴계학파의 嫡統이라고 일컫는 崔白弗庵(이름은 興遠)이 그가 夫人洞(지금의 達成郡 公山面 新武洞)을 위하여 마련한 가장 완비된 『洞約』의 하나인 이른바 『夫仁洞約』에도 『여씨향약』과 더불어 이 예안향약이 굳건한 발판역할을 하였다. 이리하여 『刑法典』과도 같이 특히 『罰目』내지 『惡行目』을 내세우는 『約條』를 담고 있는 이 예안향약은 독특한 주체성을 지녔다고 보겠다.

따라서 그것을 정신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立約史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적인 조선조향약의 좌표를 제시하였다. 예안향약은 조선조향약의 始源으로 도처에 뿌리를 내리므로 조선조 후기까지 지속되어 왔고 이십세기 즉 일제하(1932년)에서 까지도 향약은 存續事行되어 왔다.

## II. 禮安鄉約의 특징

역대 향약의 기본구조를 더듬어 본다면 향약은 대개가 사대강목(過失相規·德業相勸·禮俗相交·患難相恤)이 정식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를 다시 대별한다면 『勸善의 德目과 懲惡의 罰目』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하여 『懲惡의 罰目』에 속하는 過失相規 一綱目を 제외한 나머지 三綱目は 모두 권선적 덕목에 속하고 있다. 조선조에서부터 일제 때까지 시행된 역대향약의 수는 무려 육십종이나 되지만 대개 다음의 『七大鄉約』을 대표적 향약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① 藍田呂氏鄉約 ② 朱子增損呂氏鄉約(諺解) ③ 禮安鄉約(鄉立約條序 附約條) ④ 西原鄉約 ⑤ 海州鄉約 ⑥ 社倉契約束 ⑦ 海州一鄉約 등이 그것이다. 其中 이퇴계의 예안향약과 이율곡의 서원향약을 제외한 나머지 五個향약은 모두 다 『勸善의 德目』을 主脈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권선적 덕목류에 속하는 향약은 그 내용의 성격상으로 볼 때 『여씨향약』 내지는 『주자증손여씨향약』의 성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예안향약은 여씨향약 내지는 주자증손여씨향약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판이하게 다른 독립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세분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여씨향약>은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의 四綱目の 약속을 基幹으로, 그리고 <주자증손여씨향약>의 경우에는 이에 다시 저마다의 세부적 節目과 더불어 『集會讀約之禮』를 더하여 이루어졌지만 <예안향약>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2) <여씨향약>내지 <주자증손여씨향약>의 경우에는 『相勸』『相規』『相交』『相恤』의 선행 실천에 대한 지향성을 줄거리로 하는 이른바 『勸善引導의 法』이지만 <예안향약>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악행만을 열거하여, 그에 대한 罰의 量을 정한 이른바 하나의 「형법전」과도 같은 罰則을 줄거리로하여 이루어졌다. 다시말하면 前者에서는 勸善의 지향에 역점을 두었지만 後者에서는 오로지 懲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퇴계

자신은 勸導의 방법을 국가가 庠序를 마련하여 가르치듯이 다른 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기가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鄉立約條序에서 밝히고 있다.

(3) <예안향약>은 罰則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체로 <여씨향약> 내지 <주자증손여씨향약>의 경우 『過失相規』의 강목에 상당한다고 보겠다.

(4) <여씨향약> 내지 <주자증손여씨향약>의 경우에는 書于籍이 勸善의 면에서나 懲惡의 면에서 다같이 賞罰의 본질적인 독특한 수단으로 되어 있지만 <예안향약>에서는 勸善의 경우에는 물론 懲惡의 경우에서 까지도 이러한 방식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주자증손여씨향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머지 罰目들도 <예안향약>에서는 엿볼 수 없다. 그대신 罰目으로서 極罰·中罰·下罰의 3등급을 마련하고 다시 그것을 저마다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9등급에 걸친 罰則을 마련하고 있다.

(5) <주자증손여씨향약>에서는 과실을 德業의 不相勸이다. 그렇지만 <예안향약>의 경우에는 악행은 不相勸으로서 파악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德業』 節目的 正반대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 III. 禮安鄉約 내용을 통해 본 自治觀

이퇴계의 예안향약과 더불어 이율곡의 西原 및 海州三約은 『조선조향약의 立約的 좌표』가 되어 후세에 널리 원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조선조향약의 立約的 始源인 예안향약 즉 『鄉立約條序』와 『附約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퇴계의 향민자치관을 찾아볼 수 있겠다.

첫째는, 『鄉立約條序』에서 지방자치를 강조한 점이라 하겠다. 이퇴계는 人道의 大本인 『효제충신』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곳이 향당 즉 지역사회라고 하였다.

향당에 지도자가 있으면 온 고을이 肅然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

지 못하면 향당은 해체되고 만다는 관점에서 鄉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향당일수록 나라님의 교화(玉靈)를 힘입음이 지역 거리상 적기 때문에 스스로 효제충신의 도를 宣揚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여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다스려 나가야 할 체제와 풍토(환경)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향약을 立約하게 된 이유는 불변적인 인륜의 常道를 遵行하기 위함이었다. 時俗에 따라 그때 그때 존재하는 法制는 먼뒹날에 있어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지만, 인간생활의 倫綱인 彝倫之則은 언제나 변할 수 없다는 데서 자치관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古者鄉大夫之職，導之以德行道藝，而糾之以不率之刑，爲士者亦必修於家著於鄉而後，得而賓興於國，若是者何哉，孝悌忠信，人道之大本，而家與鄉黨，實其所行之地也。先王之教，以是爲重故，其立法如是，至於後世，法制雖廢，而彝倫之則，固自若也，……得人則一鄉肅然，匪人則一鄉解體，而況鄉俗之間遠於王靈，好惡相攻，強弱相軋，使孝悌忠信之道，或尼而不行則棄禮義損廉恥，日甚流而爲夷狄禽獸之歸，止實王政之大患也。自今以往，凡我鄉士，本性命之理，遵國家之教，在家在鄉，各盡夫彝倫之則則，斯爲王國之吉士，或窮或達無不胥賴，非唯不必別立條以勸之，亦無所用罰矣，苟不知出此犯義侵禮，以壞我鄉俗者，是乃天之弊民也，雖欲無罰得乎，此今日約條之所以不得不立也。

원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효제충신의 도를 遵行하지 않고 禮義廉恥를 저버림이 만약 날로 심해져 갈 경우 이적금수와 마찬가지로 될뿐만 아니라 이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폐민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罰則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당의 約條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로, 민주와 법치를 강조한 점이라 하겠다. 예안향약의 『附約條』에서는 일반적 향약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사대강목 중에서 『過失相規』의 一綱目만 취급하고 있다. 비록 예안향약의 내용이 『懲惡의 罰目』으로서의 過失相規만을 가지고 立約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一綱目이야말로

로 향약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관계의 차원에까지 끌어 올린 가장 주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강목으로 말미암아 과실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으로서의 罰을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예안향약의 이념이 교화 차원을 위한 윤리·도덕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와 법치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鄉條』중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조직의 최말단인 가정에서부터 도덕관과 윤리관을 훈련 강화함으로써 가족간의 화목하고 관용하며 예의와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한 약조를 했는가 하면(極罰條 參照), 사회적으로는 민주와 법치를 중심으로 한 공공질서 내지는 공동생활 규범의 확립, 공사한계의 명확과 사회기풍의 확립등을 약조한 것은 여타 향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鄉民의 민주·법치적 지방자치정신을 토착화시켜 보려는 의지임을 간파할 수 있겠다. (中罰條 및 下罰條 參照)